

직 제 규 정

제	정	2005. 04. 06.
개	정	2006. 04. 06.
개	정	2006. 10. 12.
개	정	2006. 12. 27.
개	정	2007. 07. 10.
개	정	2008. 07. 02.
개	정	2008. 10. 14.
개	정	2009. 02. 09.
개	정	2009. 05. 04.
개	정	2010. 09. 17.
개	정	2010. 12. 28.
개	정	2011. 12. 30.
개	정	2012. 05. 09.
전문개정		2015. 03. 30.
개	정	2015. 10. 12.
전문개정		2018. 07. 20.
개	정	2018. 09. 10.
개	정	2018. 12. 28.
개	정	2019. 02. 01.
개	정	2019. 03. 28.
개	정	2019. 12. 30.
개	정	2020. 04. 07.
개	정	2022. 04. 01.
개	정	2023. 12. 26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북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10.12.>

제2조(적용 범위) 연구원의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2장 조 직

제3조(원장)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직제규정

제4조(조직) ①연구원에 연구본부, 기획조정실, 생명경제정책실, 지역혁신정책실, 지속사회정책실, 운영지원실을 둔다.〈개정 2023.12.26.〉

②연구원에 전북의 미래 아젠다 발굴 및 미래비전 업무 전담기구인 미래전략연구센터를 둔다.〈신설 2023.12.26.〉

③본부장, 실장은 책임연구위원급 및 관리직 3급 이상 중에서 보하며, 하부조직의 장은 원장이 정한다.

④연구원에 부설기관으로 원장 직속의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지속사회정책실에 인구·청년지원연구센터를 둔다.〈개정 2018.12.28., 2019.12.30., 2022.4.1., 2023.12.26.〉

⑤부설기관의 정원은 분장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.〈개정 2018.12.28., 2023.12.26.〉

제5조(연구자문위원회) 연구원에 연구자문위원회를 둔다.

제5조의 2(운영위원회) 연구원의 의사결정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〈신설 2018.9.10.〉

제6조(하부 조직) ①연구원의 연구 활동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조직의 개편은 원장이 행한다.

1.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직의 하부 조직
2.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하부 조직

②제1항에 의한 하부 조직을 설치하였을 경우, 원장은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한시 조직) 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 이하의 한시 조직으로서 통합연구단을 구성할 수 있다.

제8조(기구 및 정원) ①연구원의 기구와 직종 및 정원은 〈별표 1, 2, 3〉와 같다. 〈개정 2018.12.28., 2019.3.28., 2019.12.30., 2020.4.7., 2022.4.1., 2023.12.26.〉

②각 부서별, 직종별 인원은 정원 총수의 범위 안에서 원장이 정한다.

제9조(정원 외 직원) ①원장은 각 개별 과업수행 및 연구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빙연구위원 및 위촉 연구원·행정원 등을 당해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직원으로 둘 수 있다. 〈개정 2019.2.1.〉

②정원 외 직원의 임면 및 처우에 관한 기준은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0조(직무대리) ①직무대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1.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본부장이 그 직무대리를 하며, 연구본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

직제규정

장, 생명경제정책실장, 지역혁신정책실장, 지속사회정책실장 등이 직무대리를 한다. <개정 2018.9.10., 2023.12.26>

2. 부서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소속 부서 직원 중 직급 순에 따른 선임직원이 직무대리를 한다. <개정 2018.9.10.>

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원장이 대리할 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8.9.10.>

제3장 업무분장

제11조(연구본부) 연구본부는 연구본부 업무를 감독, 총괄하며 하부조직에 대한 업무를 조정 한다.

제12조(기획조정실) 연구기획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23.12.26.>

1. 연구원비전(중장발전계획·사업계획·예산편성)
2. 경영평가, 경영계획 및 연구사업 운영
3. 연구자문위원회 운영, 연구기획·운영지원
4. <삭제 2023.12.26>
5. 직원 및 연구과제 평가 관리
6. 도의회, 대내외 감사, 대외협력
7. 도민소통, 청렴도, 고객만족
8. 보도자료 및 홍보, 자료실 운영, 연구성과 확산<개정 2023.12.26.>
9. 국내외 협력기관,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 및 호남·제주권 연구기관협의회 교류
10. 연구 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과 관리
11. 연구보고서 출간, 간행물, 이슈브리핑
12. 정보보안, IT 인프라, 메일링서비스
13. 홈페이지 운영, 전산업무
14. 연구성과물, 대내외 자료축적 및 DB화

제13조(생명경제정책실) 생명경제정책실은 주축·신산업, 농생명산업, 기업유치, 도농활력, 지역경제 및 통계, 소상공인 및 기업 지원, 농어촌 정책 등에 관한 연구를 분장한다.<개정 2023.12.26.>

제14조(지역혁신정책실) 지역혁신정책실은 공간 및 지역혁신, 교통·물류, 융복합관광, 새만금전략, 도시 개발·재생, 재난·안전 등에 관한 연구를 분장한다. <개정 2023.12.26.>

제15조(지속사회정책실) 지속사회정책실은 자치·복지·교육, 인구·청년, 기후·환경,

직제규정

문화·스포츠산업, 지역공동체 등에 관한 연구를 분장한다.<개정 2023.12.26.>

제16조(운영지원실) 운영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23.12.26.>

1. 조직관리, 인사, 교육업무
2. 복무관리, 후생복지
3. 문서관리, 서무업무
4. 노무관리
5. 청사, 시설, 차량 관리
6. 구내식당 운영
7. 법인카드 관리
8. 지출원인행위 및 출납, 결산
9. 연봉 및 총액인건비 관리
10. 제보험, 제세금 업무
11. 위·수탁 용역·공사·물품 계약
12. 자금 및 기금운용, 자산관리
13. 물품관리
14. 이사회 운영, 규정관리 <개정 2023.12.26.>
15. 기타 원장이 부여하는 업무 <개정 2023.12.26.>

제17조(미래전략연구센터) 미래전략연구센터는 미래 전략 연구과제 수행 및 성과물의 대내외 확산, 미래 아젠다 대외 지원 및 협력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.<신설 2023.12.26.>

제18조(TF팀 및 특별 연구조직) ①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TF팀 및 특별 연구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.

②TF팀 및 특별 연구조직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.

제19조(관장 사항의 결정 등) ①업무관장 부서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이 정한다.

②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20조(위임 규정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6.4.6.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6.10.12.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6.12.27.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7.7.10.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8.7.2.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8.10.14.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9.2.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본 직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회계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회계관직 지정) 분임징수관, 지출원,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중 “경리과장”을 “행정실장”으로 한다.

부 칙 <2009.5.4.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10.9.17.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지사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부설기관인 여성정책연구소 예산은 2011.1.1부터 독립적으로 운용한다.

부 칙 〈2010.12.28.〉

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11.12.30.〉

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12.5.9.〉

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15.3.30.〉

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15.10.12.〉

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18.7.20.〉

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18.9.10.〉

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18.12.28.〉

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9.2.1.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9.3.28.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9.12.30.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4.7.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4.1.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3.12.26.>

이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본 직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

(1)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①제55조, <별지서식> “행정지원부”는 “운영지원실”로, “행정지원부장”은 “운영지원실장”으로 한다.

(2)초빙연구위원 및 위촉 연구원·행정원 임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①제5조, 제9조 “행정지원부”는 “운영지원실”로 한다.

(3)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①제5조, 제21조, 제45조, 제62조, <별지 제7호 서식> “행정지원부”를 “운영지원실”로, “행정지원부장”을 “운영지원실장”으로 한다.

직제규정

②제10조, 제11조, <별지 제4-1호 서식>, <별지 제4-2호 서식> “연구기획부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(4)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①제3조, 제5조, 제26조, <별표 1>, <별표 2> “여성정책연구소장(소장)”은 삭제하고, “부장”은 “실장”으로 한다.

(5)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①<별표 1>, <별표 2> “여성정책연구소장”은 삭제한다.

(6)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①제5조, 제15조 “행정지원부장”은 “운영지원실장”으로 한다.

(7)관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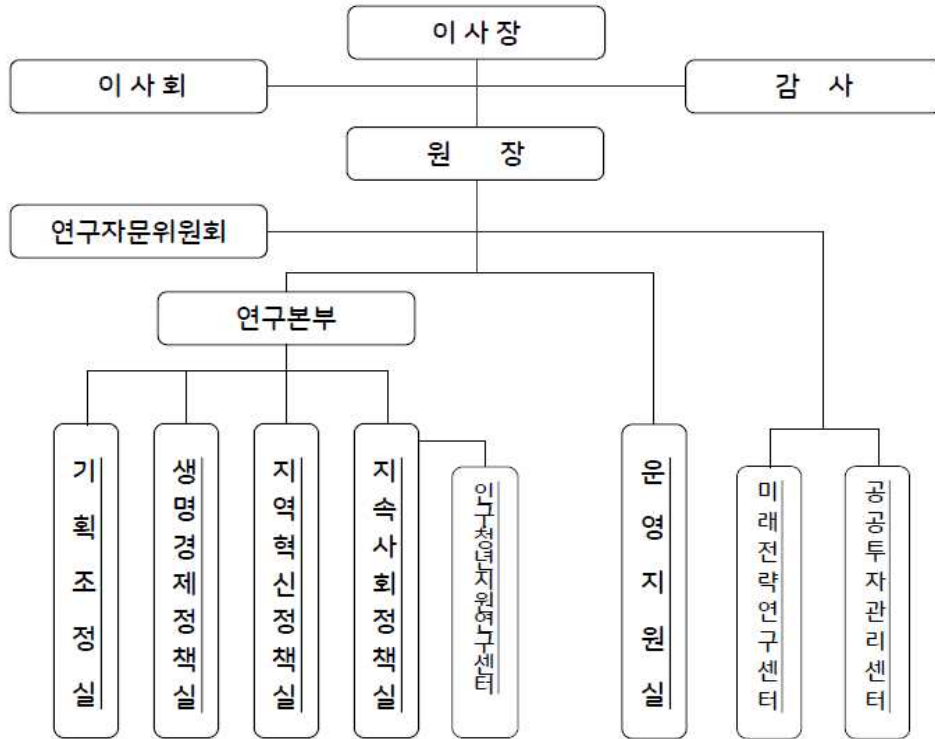
①제3조 “행정지원부”는 “운영지원실”로 한다.

(8)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①제8조 “행정지원부”는 “운영지원실”로, “행정지원부장”은 “운영지원실장”으로 한다.

<별표 1><개정 2018.9.10., 2018.12.28., 2019.3.28., 2019.12.30., 2022.4.1.,2023.12.26.>

기 구 표



직제규정

<별표 2><개정 2018.12.28., 2019.2.1., 2022.4.1.,2023.12.26>

정 원 표

직 별	직 급	정 원	
	계	75	
임 원(상 근)	원 장	1	
연 구 직	수 석 연 구 위 원	32	
	선 임 연 구 위 원		
	책 임 연 구 위 원		
	연 구 위 원		
관 리 직	2 급	8	
	3 급		
	4 급		
	5 급		
정 보 직	가 급	1	
	나 급		
	다 급		
전 문 직	전문연구원	가 급	27
		나 급	
		다 급	
	전문행정원	가 급	3
		나 급	
		다 급	
운 영 직	청 소 원	2	
	정 리 원	1	

<별표 3><개정 2018.12.28., 2019.2.1.,2019.12.30., 2020.4.7., 2022.4.1.><신설 2023.12.26>

부설기관 정원표

1. 공공투자관리센터<신설 2023.12.26.>

직 별	직 급	정 원
계		2
연구 직	수 석 연 구 위 원	2
	선 임 연 구 위 원	
	책 임 위 원	
	연 구 위 원	

2. 인구·청년지원연구센터<신설 2023.12.26.>

직 별	직 급	정 원
계		6
센 터 장	센 터 장	1
연구 직	수 석 연 구 위 원	4
	선 임 연 구 위 원	
	책 임 위 원	
	연 구 위 원	
관 리 직	2 급	1
	3 급	
	4 급	
	5 급	